

제39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99. 10. 14 (목) 10:00

# 의안

- 영주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 산업건설위원회

## 영주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8
------------	----

제출년월일 : 1999. 10.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 1. 개정이유

주차장법의 개정(99. 2. 8 법률 제5902호)으로 민영주차장의 설치운영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제공의 자율화 및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7종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민영주차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 제2호)
- 나.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주차료를 면제함(안 제3조 제2항 제2호)
- 다. 주차장의 표시를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만 규정함(안 제5조)
- 라.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
- 마.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21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 함(안 【별표2】)
- 바. 과징금 부과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3】)
- 사. 과태료 처분 조항을 삭제함(안 제20조 【별표4】)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5. 참고자료 : 덧붙임

- 가. 관련법령(발췌) 1부.
- 나. 영주세무서 협조 요청 공문사본 1부.
- 다. 입법예고 결과 1부.

## 영주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영주시주차장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삭제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2.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증(스티커) 부착자동차(부착일로부터 1년간)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주차장의 표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
2. 노외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3.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 할 수 있다.
  - 가.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 나.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 다. 주차장 이용시간
  - 라. 기타 필요한 사항

4. 노외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8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 한다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1> 및 <별지2>와 같이 하고, 【별표4】,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5조제2항 관련)”을 “(제5조제2호 관련)”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중 “(제5조제3항 관련)”을 “(제5조제3호 관련)”으로 하며, “(신고 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등)” 및 “민영노외주차장”란을 삭제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중“(제5조 제5항 관련)”을 “(제5조 제4호 관련)”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별지1&gt;

## 【별표2】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2조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m' 당 1대
2. 문화 및 접회사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 (골프장 ·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m'당 1대
3. 제1종 균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균린생활시설 ·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m'당 1대
4.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30m'초과 200m'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m'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m'를 초과하는 130m'당 1대를 더한 대수
5.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기숙사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20m'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300m'당 1대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제1종 균린생활시설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문화 및 집회 시설중 수도원, 수녀원, 제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 한다)
  - 라. 공공용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법 제2조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 한다)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数점이하 첫째 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数점이하의 수가 0.5이

상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수점이 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 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 대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 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별지2&gt;

【별표3】

## 과정금기준(제19조제1항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주차장법)	위반정도	기본 과정금	가감후과정금	
				주차대수 40대미만	주차대수 40대이상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6조 제1항	위반시	50	45	50
		1회이상시정명령 위반시		50	60
2. 정당한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법 제17조 제2항	위반시	50	45	55
		2회이상위반시		50	6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23조 제3항	개선명령1회 위반시	50	45	55
		개선명령2회 위반시		55	6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위반시	50	45	55
		2회이상위반시		50	60

## 신·구 조문 대비 표

【영주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공영주차장 :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 .....
2. 민영주차장 :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을 말한다	2. <삭 제>  3..... ..... .....
3. 인근주차장 : 부설주차장을 설치 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1..... ..... ..... .....
4. 조업주차장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영 제6조제1항 【별표1】 비고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을 말한다	..... ..... .....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하고 민영주차장 및 법 제2조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 다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2.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증(스티커) 부착 자동차(부착일로부터 1년간)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 <u>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u>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한다.	1..... ..... .....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2..... .....
③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3..... ..... ..... ..... ..... ..... ..... .....
1. 주차요금 및 그 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장 명칭, 주차 제한차량 등)	가..... 나..... 다..... 라. 기타 필요한 사항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당도로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삭제〉
⑤ 노외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3..... .....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제18조 〈삭제〉
①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과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현 행	개 정 안
<p>말하고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범위 내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부설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하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유료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 고시 한다</p> <p>③ 부설주차장 설치자가 당해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신고할 때에는 관리규정 및 【별지7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차시설 배치도</li> <li>2. 반경 100미터 이내의 도로의 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축척 1,200분의 1이상일 것)</li> <li>3. 토지 및 건축물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것</li> <li>4.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li> </ol> <p>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법 제15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⑤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당해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5조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노외주차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⑥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10조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20조(과태료처분)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수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4】와 같다</p>	<p>제20조 &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별표2】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2조관련)		【별표2】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2조관련)		
숙박시설	호텔·관광호텔· 가족호텔·휴양촌 도미니엄	2개설당 1대·부대운동시설별·산정 대수·기타부대시설면적 40m <sup>2</sup> 당 1대	1. 위탁시설	시설면적 100m <sup>2</sup> 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20m <sup>2</sup> 당 1대	2. 문화 및 김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 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 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꽃꽂	
의료시설	종합병원	3개설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80m <sup>2</sup> 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3. 제1종 균형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균형 생활시설·숙박시설	시설면적 150m <sup>2</sup> 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20m <sup>2</sup> 당 1대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식당 1대		
운동시설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사업지역: 시설면적 150m <sup>2</sup> 당 1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시설 면적 175m <sup>2</sup> 당 1대 기타지역: 시설면적 200m <sup>2</sup> 당 1대		
				시설면적 130m <sup>2</sup> 초과 200m <sup>2</sup> 이하의 경우에는 1대,
관광문화시설	운동경기관람장	수용인원 100인당 1대	4. 단독주택·다세대주택	시설면적 200m <sup>2</sup> 초과의 경우에는 1 대에 200m <sup>2</sup> 를 초과하는 130m <sup>2</sup> 당 1 대를 더한 대수
	예식장	시설면적 40m <sup>2</sup> 당 1대		
	기 타	사업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시설면적 100m <sup>2</sup> 당 1대 기타지역: 시설면적 150m <sup>2</sup> 당 1대		
판매시설	백화점·쇼핑센터	시설면적 50m <sup>2</sup> 당 1대	5.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 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20m <sup>2</sup> 당 1대
	기타	시설면적 80m <sup>2</sup> 당 1대		
위탁시설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유통물식점	시설면적 50m <sup>2</sup> 당 1대		
설치되는 위탁시설을 제외한다)	기타	사업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시설면적 100m <sup>2</sup> 당 1대 기타지역: 시설면적 150m <sup>2</sup> 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 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 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업무시설, 종교시설		사업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시설면적 100m <sup>2</sup> 당 1대 기타지역: 시설면적 150m <sup>2</sup> 당 1대	7.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300m <sup>2</sup> 당 1대
전시시설, 유통시설, 방송· 통신시설, 창고시설(냉동·냉장 창고를 제외한다)		사업지역: 시설면적 100m <sup>2</sup> 당 1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시설면적 150m <sup>2</sup> 당 1대 기타지역: 시설면적 200m <sup>2</sup> 당 1대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0m <sup>2</sup> 당 1대		
단독주택		건축연면적 130m <sup>2</sup> 초과 200m <sup>2</sup> 이하의 1대, 건축연면적 200m <sup>2</sup>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m <sup>2</sup> 를 초과하는 130m <sup>2</sup> 당 1대를 더한 대수(주택간접기) 준동·제한된 규모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등 규 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120m <sup>2</sup> 당 1대(주택간접기준등에 신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등 규정 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타건축물		사업지역: 시설면적 250m <sup>2</sup> 당 1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시설 면적 300m <sup>2</sup> 당 1대 기타지역: 시설면적 350m <sup>2</sup> 당 1대		

현 행	개 정 안
<u>&lt;비 고&gt;</u> <u>&lt;신설&gt;</u>	<p>〈비 고〉</p> <p>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p> <p>나. 문화 및 접희 시설중 수도원, 수녀원, 제설 및 사당</p> <p>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 한다)</p> <p>라. 공공용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험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p> <p>마. 법 제2조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p> <p>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p>
1.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2..... ..... ..... ..... ..... .....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3..... ..... ..... ..... ..... .....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3..... ..... ..... ..... ..... .....
	〈삭 제〉

(제39회 - 산업건설 제1차 부록)

현 행	개 정 안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이하 두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제곱미터이하이고, 전체시설물의 면적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4. ..... .....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까지의..... ..... 이하인 경우에는..... ..... .....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당해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숙박시설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카페일바·다실·연회실·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제39회 - 산업건설 제1차 부록)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과정금기준(제19조제1항관련) (단위 : 만원)				【별표3】 과정금기준(제19조제1항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문 (주차장법)	기 본 위 반 정 도 과 정 금	기장후과정금 주차 대수 40대 미만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주차장법)	위 반 정 도	기 본 과 정 금
1. 권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의주차장의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 요금을 받은 때	법 제15조 제2항	위반시  위반상태가 1개 월이상	250 250 300	〈삭 제〉			
2. 권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 요금을 받은 때	법 제15조 제2항	위반시  2회이상위반 또는 주차요금의 50%이상 3회이상위반 또는 주차요금의 100%이상	90 100 110 110 120	〈삭 제〉			
3. 노의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6조 제1항	위반시  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45 50 60	1. 노의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6조 제1항 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위 반 시  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45 50 60
4. 정당한 사유없이 노의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법 제17조 제2항	위반시  2회이상 위반시	45 50 6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의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법 제17조 제2항 2회이상 위반시	위반시  2회이상 위반시	45 50 60
5. 노의주차장의 이용에 원활히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 제1항	위 반 시  2회이상위반시	45 50 60	〈삭 제〉			
6. 노의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23조 제3항	개선명령1회 위반시  개선명령2회 위반시	45 55 60	3. 노의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23조 제3항 위반시	개선명령1회 위반시  개선명령2회 위반시	45 55 60
7. 노의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위 반 시  2회이상위반시	45 50 60	4. 노의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	법 제25조 제1항 2회이상위반시	위반시  2회이상위반시	45 50 60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제20조관련) (단위 : 만원)				【별표4】 〈삭 제〉			
위 반 행 위 별	관련법 조문	구 분	과 대료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의주차장을 설치한 자	법 제12조 제2항	주차 대수 40대 미만	90				
		주차 대수 40대 이상	100				
2. 신고필증을 반기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법 제12조 제5항	주차 대수 40대 미만	50				
		주차 대수 40대 이상	100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의 이용을 즐지 또는 폐지한 자	법 제16조	주차 대수 40대 미만	40				
		주차 대수 40대 이상	50				

현 행	개 정 안																																
<p>- <b>비고</b> -</p> <p>시장은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조정·부과 할 수 있다.</p> <p>【별지 제1호서식】 노외주차장표지(제5조제2항관련)</p> <p>【별지 제2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5조제3항관련)</p> <p>○ 규격: 가로90cm × 세로80cm</p>	<p>【별지 제1호서식】 노외주차장표지(제5조제2호관련)</p> <p>【별지 제2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5조제3호관련)</p> <p>○ 규격: 가로90cm × 세로80cm</p>																																
<p><b>비고</b></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재료</th> <th>색 채</th> <th>글씨(고딕)</th> </tr> </thead> <tbody> <tr> <td>노상주차장</td> <td>알루미늄판</td> <td>독색</td> <td>흰색</td> </tr> <tr> <td>공영노외주차장</td> <td>"</td> <td>"</td> <td>"</td> </tr> <tr> <td>민영노외주차장</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별지 제3호서식】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판(제5조제5항관련)</p> <p>【별지 제7호서식】 무선주차장인반이용신고서(제18조 제3항관련)</p> <p>【별지 제8호서식】 무선주차장인반이용신고필증(제18조제4항) &lt;삭 제&gt;</p>	구 분	재료	색 채	글씨(고딕)	노상주차장	알루미늄판	독색	흰색	공영노외주차장	"	"	"	민영노외주차장	"	"	"	<p><b>비고</b></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재료</th> <th>색 채</th> <th>글씨(고딕)</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lt;삭 제&gt;</p> <p>【별지 제3호서식】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판(제5조제4호관련)</p> <p>&lt;삭 제&gt;</p>	구 분	재료	색 채	글씨(고딕)	.....	.....	.....	.....	.....	.....	.....	.....	.....	.....	.....	.....
구 분	재료	색 채	글씨(고딕)																														
노상주차장	알루미늄판	독색	흰색																														
공영노외주차장	"	"	"																														
민영노외주차장	"	"	"																														
구 분	재료	색 채	글씨(고딕)																														
.....	.....	.....	.....																														
.....	.....	.....	.....																														
.....	.....	.....	.....																														

## 관 련 법 령 (발 쥬)

### □ 주차장법 (개정 1999. 2. 8 법률 제5902호)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 2. 8>

② 내지 ⑤ 삭제 <99. 2. 8>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당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개정 '99. 2. 8>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 2. 8>

③~④ <생략>

제15조(관리방법)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9. 2. 8>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식) ①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 2.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식의 종류·문서 기타 표식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9. 2. 8>

###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 2 <생략>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4. 제2종근린생활시설

- 가. 일반음식점·기원
-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서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 마.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 입 법 예 고 결 과

- 조례명 : 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영주시보 제189호('99. 8. 11) 게재
- 예고기간 : '99. 8. 11 ~ 8. 30(20일간)
- 의견제출여부 : 없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진현
------	-----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 1. 의 안

- 의안번호 : 제78호
- 의 안 명 : 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해당부서 :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 2. 개정이유

주차장법의 개정('99. 2. 8. 법률 제5902호)으로 민영주차장의 설치 운영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제공의 자율화 및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7종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민영주차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제2호)
- 나.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주차료를 면제함(안 제3조제2항 제2호)
- 다. 주차장의 표시를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만 규정함(안 제5조)
- 라.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
- 마.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21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함(안 【별표2】)
- 바. 과징금 부과기준을 조정함(안 【별표3】)
- 사. 과태료 처분조항을 삭제함(안 제20조 【별표4】)

#### 4.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의 목적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주차장 관련 조항의 개선·보완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조항에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추가시키기 위함임.

종전의 조례와 대비하여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제2호, 민영주차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 안 제3조제2항제2호,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주차료를 면제하며,
- 안 제5조, 주차장의 표시를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 안 제18조,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 안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21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하고,
- 안 【별표3】, 과정금 부과기준을 조정하며,
- 안 제20조 및 【별표4】, 과태료 처분조항을 삭제함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주차장법의 개정·공포에 따른 조례개정으로는
  - 민영주차장 관련 규제 철폐로 제2조제2호의 삭제와 제5조의 개정과,
  - 부설주차장 규제완화를 위한 제18조의 삭제와 【별표2】의 개정이며,
  - 민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관련 벌칙조항인 【별표3】의 개정과 제20조 및 【별표4】의 삭제로,
  - 주차장법 개정·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제3조제2항의 개정은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규정에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추가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정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종합적 검토의견은 제출된 동 조례안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편익 증대와 국세 및 지방 세의 성실납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999. 10.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현